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38
----------	------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의자 : 홍영표 · 박재호 · 김경수
우원식 · 남인순 · 문미옥
한정애 · 이용득 · 이 훈
최인호 · 박광온 · 권미혁
김정우 · 신창현 · 양승조
김현미 · 송옥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움. 이에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

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통해 그 책임성이 드러난 만큼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함(안 제19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특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생 략)</p> <p><u><신 설></u></p>	<p>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 책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p> <p>③ 면책,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p>
<p><u><신 설></u></p>	